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며, 교통복지지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674호, 2023. 8. 16. 공포, 2025. 2. 17. 시행 및 법률 제20038호, 2024. 1. 16. 공포, 2025. 1. 17. 시행)됨에 따라,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교육대상자 지정(안 제13조의2 개정)
- 나.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제한 세부기준 마련(안 제14조의8 신설)
- 다. 교통복지지표의 조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(안 제23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-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.

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8(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)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
1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: 20년
2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5조의4, 제5조의5,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: 20년
3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: 6년

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: 20년
5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(같은 조 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: 10년
6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(같은 조 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: 15년
7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: 6년
8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: 9년
9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(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,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: 4년
10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(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: 6년
1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: 2년
12. 「형법」 제332조(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: 18년

13. 「형법」 제332조(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, 제 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: 20년
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 4호까지, 제3조부터 제9조까지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 및 제1 5조에 따른 죄: 20년

15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죄: 2 0년

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 회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·범죄경력조회 요청 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: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· 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2.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

가.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

나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·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③ 제2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 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

령으로 정하는 운전·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교재 개발 업무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 등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(이하 “교통복지지표”라 한다)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

2.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률

3. 교육 실시 현황 등 교통사업자·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도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지표를 산정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·도별로 교통복지지표를 산정하여야 하며, 산정된 교통복지지표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의2(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) <신 설></p> <p>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3조의2(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)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”이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의8(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)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</p> <p>1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: 20년</p> <p>2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, 제5조의4, 제5조의5,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</p>

다른 죄: 20년

3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9제4항에

다른 죄: 6년

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

에 따른 죄: 20년

5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

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

른 그 각 미수죄(같은 조 제1

항제2호, 제3호 및 제8호의 미

수범은 제외한다): 10년

6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

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

각 미수죄(같은 조 제1항제2

호,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

은 제외한다): 15년

7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

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

른 그 각 미수죄: 6년

8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

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

각 미수죄: 9년

9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(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,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: 4년

10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(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: 6년

1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: 2년

12. 「형법」 제332조(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: 18년

13. 「형법」 제332조(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,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: 20년
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

호부터 제4호까지, 제3조부터 제9조까지, 제14조, 제14조의 2,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: 20년

15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죄: 20년

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·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: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·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2.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

가.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

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
는 서류

나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운전·범죄경력조회 동의
서

③ 제2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
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
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
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
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
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
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
하는 운전·범죄경력조회 회신
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
다.

제21조의3(권한의 위임 또는 위
탁) ①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
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
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1. 2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<신 설>

제21조의3(권한의 위임 또는 위
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
교육교재 개발 업무

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

등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(이하 “교통복지지표”라 한다)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를
2.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률
3. 교육 실시 현황 등 교통사업자·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도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지표를 산정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별로 교통복지지표를 산정하여야 하며, 산정된 교통복지지표를

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
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772